# 에린 브로코비치

# □ 프로보노(Pro bono)

"Pro bono publico"는 "공익을 위하여"를 의미를 지닌 용어다. 법조계에서 쓰이는 속기 용어 "Pro bono"는 일반적으로 대개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무보수로(또는 대폭 경감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가리킨다.

프로보노는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며, 법률뿐 아니라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미국 변호사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프로보노 활동 순위는 로펌의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 □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상담 기관

#### I.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에는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의뢰자로부터 상환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전액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국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상담을 도입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 서류 작성, 그리고 상담소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을 통해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 목차

- \_ 프로보노
- □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상담 기관
- □ 집단소송제도
- □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
- □ 제조물책임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NOTE

# Ⅲ.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9년에 설립되어 2002년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되었으며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평등과 정의의 사회실현'을 위해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조력, 화해, 조정, 소송 구조 등 모든 법률적 구조 사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 IV.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조 희망자는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개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관련 서 류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변협 법률 구조재단은 심사를 하여 법률구조 대상자로 인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 준다. 이때 법률구조사업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 과 기타 소송비용을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게 대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사무실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실에 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 집단소송제도

### I . 의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공통의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 전체를 대표하여 1인 또는 소수의 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조선의 침몰로 인한 원유의 유출 때문에 인근 바다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양식장의 어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가 유조선의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Ⅱ. 요건

①집단의 구성원이 다수이어서 모든 구성원을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impractical)이고, ②소송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법률문제 또는 사실문제(question of law or fact)를 포함하고 있으며, ③집단대표자의 소송제기원인과 집단구성원의 소송제기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야하고, ④대표자는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Ⅲ. 집단소송의 제기사유

①집단의 구성원이 각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 (prejudice)을 받을 것, ②피고의 행위가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선언 또는 금지명령(declaratory



or injunctive relief)이 집단전체의 이익을 줄 것 ③집단소송과 집단구성원의 개별소송을 비교하는 경우 집단소송이 소송을 판결하는 데 있어 개별소송보다 우월할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Ⅳ. 효과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집단구성원에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집 단구성원 전원을 구속한다. 다만 집단소송에서 배제해줄 것을 명백히 요청 한 자는 제외된다.

# □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

법원의 소송에 의한 방법만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I . 중재

중재는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게 판단시키는 제도이다.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해 분쟁에 관 한 판단을 제3자인 사인(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판단(중재판정)에 복종함 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공개이므로 업무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특히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이다. 사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비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해결보다 오히려 적절한 사건해결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Ⅱ. 화해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 1. 민법상 화해

이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분쟁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손쉽고 바람직한 분쟁해결수단이다. 다만 민법상의 화해는 계약에 불과하므로 화해의 내용대로 상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재발되며 그렇게 되면 소송 등을 통하여 다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 2. 재판상 화해

화해과정에 법관이 개입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

는 점에서 민법상의 화해와 다르다.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화해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화해의 내용을 실현하게 된다. 이는 소송 진행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화해하는 소송상 화해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고 상호 양보하여 화해하는 제소 전 화해의 두 종류가 있다.

#### Ⅲ. 조정

### 1. 의의

민사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과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사정을 참 작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 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이다. 민간인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장점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1)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 (2)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 (3)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 (4)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 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
- (5)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 3. 효과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2)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조물책임

# I . 의의

구입한 물건에 있는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이다.

#### Ⅱ.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 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예를 들어 식품의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전자제품의 제 조과정에서 부적합한 재료가 사용되거나 조립이 부정확해서 안전성이 떨어 진 경우 등이다.

####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였다면 피해를 줄이거 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예를 들어 녹즙기 제조업자에게는 녹즙기 이용자의 손가락이 잘려나가 지 않도록 녹즙기를 설계할 책임이 있으며, 전기매트의 설계자에게 매트의 온도가 적정선까지만 올라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 제조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제조물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 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한다.

▷ 예를 들어 다림질할 때 유지해야 할 적정온도를 다리미에 표시하지 않

# 더 알아보기

### □ 리콜(Recall) 제도

제조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생산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공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리, 교환, 환급 등 특별점검을 하는 제도. 제조물 책임상담이나 소송은 당사자만 구제받지만, 리콜제도에서는 같은제품을 구입한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게 된다.

리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품안 전정보센터(<u>www.safetykorea.kr)</u> 에서 확인 가능하다.

# NOTE



아 의류가 손상된 경우, 의약품에 연령에 따른 적정 복용량을 표시하지 않 거나 잘못 표시하여 약물을 과용하게 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④ 기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안전성의 부족

▷ 제조물의 특성, 유용성과 위험성,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가격 대비 효과, 일반적인 사용 시간 등 제조물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Ⅲ. 피해자의 입증

- 1.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 하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실,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 2. 제조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거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 3.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IV. 손해배상책임

- 1. 피해자는 피해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제조 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2.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
- 3.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 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I.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이와 같은 정도로 비난가능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그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塡補的) 내지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무도한(outrageous)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고의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에서 인정된다.

## Ⅱ.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백만 달러 이상의 피해보상액수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최근 들어 점차 그 단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한 소비자가 인공위성 접시회사와의 분쟁에서 1,200달러를 초과 징수당했다는 이유로 5억 8천만 달러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1994년 맥도널드 식당에서 커피를 산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한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엎질러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290만 달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O. J. 심슨사건에서도 심슨은형사소송에서는 무죄평결을 받았으나 1997년 2월 미국 샌타모니카 지방법원 배심원은 심슨에게 3350만 달러(약 39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고 이 중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금액은 850만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25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으로 밝혀졌다.

### Ⅲ. 우리나라의 도입여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나, 성희롱의 경우, 언론피해의 경우,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집단소송의 경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와 민사사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영미법계에서나 인정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배상을 전 보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